

안전교육 이수증 번호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

안전 관리자	성명(교육이수자)
	기관명
	소재지
	교육과정 및 일시

위 안전관리자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안전관리지원기관장

직인